

소방업무의 발전방향



이 유 용

(본협회부설 방재시험소 소장)

1. 서론

불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계 어느 나라나 갖추고 있는 소방법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인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화재로부터의 국민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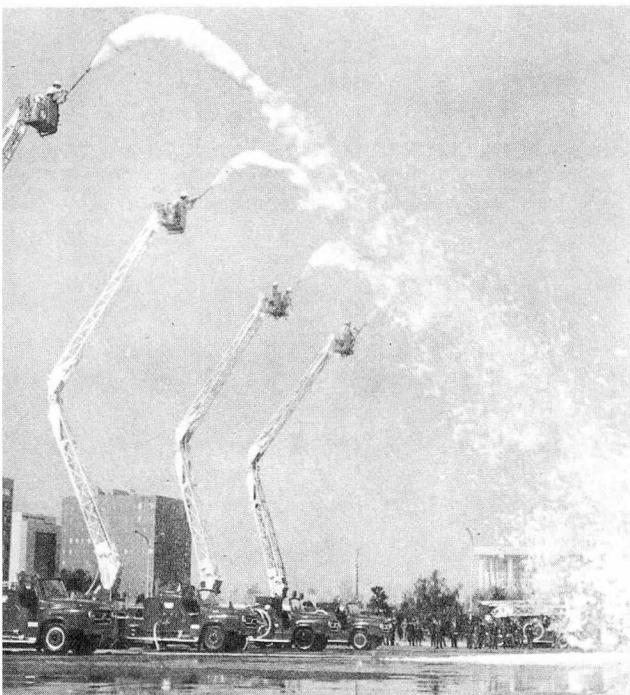
소방법이 제정, 시행되어온 지 대략 30년, 그동안 우리 소방법은 무려 10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과 사회의 변천에 따라 그 적용내용도 많은 변혁을 가져온게 사실이다.

특히 60년대 경제개발 정책에 따른 고도성장기 이후에 다른 나리에서도 필연적으로 겪었듯이 우리는 세계적인 많은 대형 화재를 겪어야만 했다.

1971년 크리스마스날, 지금도 우리 뇌리에 생생한 1백 63명의 사망자와 6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연각 호텔 화재는 이미 70년대 세계 10대 화재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해인 1972년에 수도 서울의 최 중심부에서 사망 53명, 부상 78명의 대참사를 낸 시민회관 화재도 우선 당장의 고도성장에만 전념한 우리의 불찰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대형참사에 따라 정부에서는 1973년 12월에 일차적으로 소방법을 대폭 개정하여 화재 위험이 많은 특수장소의 커텐, 카페트 등에 대한 방염처리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 등 많은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강화토록 하는 등 화재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펴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업무는 단순한 행정력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들로 하여금 안전점검등 화재예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해(利害)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손해보험회사로 하여금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설립 운영토록 하였다.

또한 소방의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공무원 조직이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시기도 이 무렵인 1975년도였으며 같은 해에 소방설비의



설치를 보다 공학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기 위해 소방설비기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7년 소방용 기계기구의 완벽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수적으로 수행해오던 소방기기 검정업무를 전담법인에서 담당토록 소방정책을 수립하여 소방검정공사를 발족, 업무를 개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소방조직은 국가조직이나 민간조직 모두가 양적, 질적으로 대폭 확대발전되어 1970년대 후반에는 그다지 큰 화재들이 발생하지 않아 대형화재 측면에서 다소 안심을 했던 시기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소방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여론도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국가의 모든 행정을 국민편의 위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소방법도 그간에 대형화재 발생이 적고 소방에 대한 일부 불만여론을 감안하여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등 많은 완화조치를 반영하여 1981년 4월, 아홉번째로 소방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소방법규의 완화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하였던 대형화재들이 그간의 계속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다시 지방의 공장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1983년 10월 풍한방직(검정회사 산정피해액 1백 60억원),

83년 12월 일신방직(동 50억원), 85년 4월 태광산업(동 2백 36억원) 화재들이 우리를 진장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온 국민의 정성으로 건립중인 독립기념관의 화재를 돌이켜 볼 때 화재에 관한 한 세심한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고 하는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2000년대 세계속의 선진 한국을 지향하는 대도약의 시점에서 애써 이루한 우리의 재산과 소중한 인명을 화재의 제물로 희생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기위해 소방의 발전방향을 주마간산 격으로 몇가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소방업무의 발전방향

가. 소방기구의 품질향상

지금 우리나라에는 60여개의 소방기기 업체에서 연간 대략 5백억원 상당의 소방용 기계기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소방기기들은 우리들이 건설한 각종 산업시설과 건물의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유사시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상공부의 제조업 허가 및 규제를 받지 않고 소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에서 그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 중요성 때문에 생산 즉시 시중에 판매, 유통시키지 못하고 생산제품 일정량을 모아서 소방법 제 38조 및 소방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정을 필하고 검정합격 증지를 부착하여야만 시중에 판매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렇듯 소방기계기구의 형식 및 품질을 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으므로 여러 회사의 제품들이 그 형식이나 규격들이 거의 유사하기 마련이며 한편 각종 산업발전에 따른 신제품의 개발시에는 이들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 공포해야 하고 또한 검사서비스를 검정 대행기관에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또한 소방기구의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같은 종류의 소방기구로서 그 생산업체가 여러 회사가 있을 경우, 검정을 필하기만 하면 설치, 시공에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으므로 검정에 필한 제품중에서 가장 가격면에서 저렴한 것만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는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좀더 신뢰성 있는 우수 제품을 개발하려 하지 않고 검정에 합격할 정도의 최저품질 수준으로 가격저렴화에만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품질향상에 대한 업계의 경쟁 대신 가격저렴화에 치우친 결과로 소방기구의 해외수출실적은 다른 공산품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국산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수출입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이고 보면 소방용 기계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해 무언가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소방기구의 시험검사능력을 갖춘 기관이 국가검정기준 이상으로 성능규정을 제정하고 엄격한 품질인증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가 있다면 소방법에서 이를 인정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성 있는 소방기구 품질규제제도가 수립된다면 각 기업체 별로 보다 level up된 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향상에 노력할 것이고 또 소비자들도 중요건물이나 중요부분에 대하여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된 것을 구입하여 설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소방기구도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 또한 향상된 품질로서 해외수출도 활성화될 수 있으며 화재예방적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소방점검의 민간기술 활용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업무는 크게 화재예방 업무와 화재진압 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진정한 소방의 중요 핵심부분은 화재예방업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법의 거의 대부분이 이 화재예방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이중에서도 소방설비의 설치기준 및 이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이 그 주안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각종 건물이나 공장 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한 방호시설로서 그 고유의 기능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고유시설 상황이나 관리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적절한 소방시설과 그 관리상황은 천태만상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정된 법규로서 규제하고 체크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수반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소정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격자들이 각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화재예방

을 위한 심도있고 그 상황에 적합한 소방대책을 점검보완토록 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 하여금 화재안전점검 업무등을 수행하도록 법률 제2482호로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설립,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그간 13년여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화재예방과 이에 관한 기술축적에 큰 기여를 하여 왔다.

그렇다면 소방업무중에서 많은 고급인력 및 전문기술을 요하는 소방점검은 모두 국가에서 직접 공무원이 전담하기 보다는 민간전문방재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구급업무의 활성화

구미 선진국가 어린이들에게 앞으로의 희망을 물어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소방관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들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위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곧 소방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소방관은 화재시 화재진압 뿐만 아니라 위급한 환자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시 출동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구급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종이 된 것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선진국가의 소방관 출동회수중 90%이상이 이 구급업무를 위한 출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83년도에 소방법 제11장 보칙에 이 구급업무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 업무가 소방본연의 업무로서 정착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의료 기관들과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 이 업무가 활성화되어 우리도 빨리 사회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소방관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3. 결론

이상으로 우리 소방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 보았지만 이밖에도 대형 산업체등의 각종 새로운 재해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화재안전관리자들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 그리고 소방설비 시공업체들의 전전발전 육성정책등 소방업무에 관련된 개선발전이 요망되는 사항이 많이 산적되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 보완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보면 우선 하나하나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그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